

일본의 삼위일체 개혁과 2004년도 세제개정

박 균 조

행정자치부 세정과 행정사무관

일본의 2004년도 세제개정 작업은 소위 삼위일체 개혁의 일환으로 행해져 세원이양과 함께 기초연금의 국고부담비율을 1/3에서 1/2로 인상하기 위한 안정된 세·재원의 확보라 하는 2개의 큰 과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행해졌다.

그 외에도 소득세에 있어 주택 론(Loan) 공제제도의 연장문제, 상업지 등에 관한 고정자산세 부담의 실재에 관한 논의 등 매우 중요한 테마에 대하여 기탄없는 논의가 행해져 일정의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었다.

지방세는 이상의 것 외에 개인주민세 균등할을 둘러싼 몇 개의 문제, 더욱이 지방단체에 의한 과세자주권 문제가 중요 검토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글은 일본 총무성 자치세무국장 板倉敏和의 글(지방세, 지방재무협회간, 2004년 1월호)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소득양여세」나 과세자주권 차

원에서의 「조례에 의한 감액제도」 등은 유사한 지방세 체계를 갖고있는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1. 삼위일체 개혁과 세원이양

2003년 6월에 결정된 소위 「골태방침 2003」에 의해 삼위일체 개혁의 큰 틀이 결정되었다. 간결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6년도를 최종년도로 하여 그때까지의 사이에 지방단체용 보조부담금 4조엔을 폐지 또는 삭감하고, 여기에 따른 세원이양을 행한다」라 하는 것이다.

2004년도가 초년도로 되는 것이므로 그것에 어울리는 성과를 드는 것이 요구되었지만 특히 개혁의 출발라인으로 되는 보조금 개혁이 순조롭게는 추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1월에 국회가 끝나 버려 고이즈미(小泉)총리 대신으로부터

『보조금 부담의 삭감은 1조엔 행한다. 지방에의 세원이양을 확실히 행한다』 하는 방침이 제시되었다.

이 방침을 받아 우선 보조부담금의 폐지 감축에 대해 정부 부내에서 조정이 행해졌지만, 예상대로 많은 난항을 겪었다. 난항한 하나의 원인은 생활보호비 부담금의 보조율 인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의 자유도는 완전히 좋다고 말할 정도로 확대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부담만이 늘어난다 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 제안된 것이다. 단순한 부담 전가에 지방단체가 빠짐없이 반대한 것은 어쩔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1조엔의 보조부담금의 폐지·삭감이 실현되고 전년도부터 넘긴 분을 포함하여 4,249억엔을 국가로부터 지방에 세원이양 하는 것으로 되었다. 보조부담금 정리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 논의도 있고, 비판하는 측면도 있지만 최대의 과제였던 생활보호부담금 삭감안은 일단 철회되고, 또 하나의 문제였던 의무교육 교원의 퇴직금에 관한 부담금의 폐지는 금후의 금액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일단 세원이양 예정교부금으로서 지방단체에 교부되는 것으로 결착이 피해졌다.

이와 같이 지방단체의 의견을 담은 수정이 피해진 뒤에 결정된 것이고 그 나름대로 노력의 흔적을 보이는 것으로 되었던 것이다.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보조금 중심의 행정이 변해가려는 시도가 용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당초부터 예상되었던 것이다. 그와 같은 시점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제1보로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

한다.

금액 결정에 따른 세제가 여러 개 나왔지만 그때까지의 단계에서 세원이양은 담배세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 연일 신문에 보도되고 거의 절반정도 기정 사실화되었다. 이것에 대하여 전국지사회나 시장회 등 지방단체측은 “담배세는 기간세가 아니며 세수는 감소경향이다. 시정촌간에 편재성이 강하다” 등의 이유를 들어 어디까지나 기간세의 이양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강하게 반대하는 논지를 펼쳤다. 총무성으로서도 삼위일체 개혁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지방단체의 의향을 존중하고 담배세가 아닌 기간세의 이양을 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그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삼위일체 개혁은 필히 지방에 있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지방단체는 이 점을 이해한 뒤에 새로운 국가와 지방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제부터 일본에 있어 불가결이라는 생각하에 정부의 방침에 협력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것을 충분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단순한 부담전가나 숫자 합치기로 되버리면 삼위일체 개혁은 단순히 색이 바래버린 것으로 되어 버린다. 그 때문에도 이것은 국가로서 어떻게 진짜로 이 개혁에 임할까를 제시하는 것이 어쩔든 필요하다. 거기에는 기간세의 세원이양이다. 어쨌든, 전후 세제사 속에서 기간세의 이양이 행해진 것은 알고 있는 한 1회뿐이다. 소득세로부터 도부현민세 소득할로 이양된 1962년도의 개정이다. 세원이양은 그만큼 높은 벽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논의가 행해지고 결과로서 담배세가 아닌 「소득양여세」의 창설이 결정되는 것으로 이른 경위는 여기에서의 주제는 아니므로 상세하게는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지방단체의 의향을 받아 거의 결정된 방침이 뒤엎어 졌다는 것은 보조부담금의 케이스와 똑같이 정부가 이 개혁에 거는 열의의 크기를 표시한 것이고, 금후의 지방분권개혁에 있어 큰 여세로 될 것이다.

소득양여세는 소득세의 일정액, 내년도인 경우에는 4,249억엔을 도도부현 및 시구정촌에 양여하는 것이다. 양여의 기준은 「인구」로 되어 있다. 인구만을 기초로 양여된 구조이기 때문에 양여에 있어 재량이 작동할 여지는 없다. 도도부현과 시구정촌의 배분비율은 폐지·삭감된 보조부담금의 비율로 정할 방침이다. 2004년도에 대해서는 이것이 대개 반반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율은 1대 1로 될 예정이다.

결국, 4,249억엔의 1/2의 금액에 당해 단체 인구가 전국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면 2004년도의 소득양여세액이 계산되는 구조이다.

이 방식은 소득세 등에서 말하자면 본격적 세원양양분을 먼저 취하는 형태로 되는 등 잠정안으로서는 담배세 보다도 꽤 우수하다는 것으로 지방단체로부터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말할 것도 없이, 소득양여세는 어디까지나 본격적인 세원양양까지의 잠정적인 조치이다. 2006년도까지는 소득세부터 개인주민세에 본격적인 세원양양을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여당의 방침으로 이것이 명확히

된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오랫동안 지방세의 충실강화를 위해 온 자로서는 정말로 감개가 깊은 것이다. 소득세와 개인주민세는 같은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이지만 제공제의 종류나 액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에서 이양에 있어서는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적지 않다. 시간은 걸리지 않고 소득세에서 개인주민세에의 본격적인 이양의 구체화에 대해 검토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기간제인 소비세에 대해서는 정부세제조사회의 답신에서 「충실을 노리는 것이 과제이고, 이것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추진해 간다」로 되어 있다. 소비세로부터의 이양에 대해서는 소비세율 자체의 인상시기나 폭을 둘러싼 논의나 연금·복지 재원으로서의 소비세의 논의 등 어떻게 하여도 혼연으로 되기 쉬운 경향이다. 지방소비세의 충실은 이러한 논의의 진행되는 형편도 보면서 대응해 가지 않으면 안되는 금후의 중요한 과제이다.

2004년도 세제개정은 국가로부터 지방에의 세원이양이 처음 구체적으로 논의된 연도 개정으로, 또한 국가와 지방의 관계가 크게 변하는 전환점으로 된 연도로서 기억되는 것으로 되면 행복일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후 부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싶다.

II. 상업지 등에 관한 고정자산세

상업지 등의 고정자산세는 현재 고정자산세 평가액의 70%를 과세표준액의 상한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위 7할 평가가 도입된 1994년도의 다음 평가년도에 해당하는 1997년도에 상한 80%로 도입되었다. 그 후 2000년도의 평가시 상업지 등에 있어 75%까지 인하, 2004년도 이후는 70%까지 인하는 것으로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후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감의 요망은 강하고 2003년도의 평가에 있어서도 격렬한 논의가 있었지만 토지·가옥의 평가보다 시정촌에 있어 4천억엔을 넘는 감수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경감은 늦추어졌다.

이와 같은 사정을 배경으로 하여 금회 다시 상업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논의도중의 경과를 별고로 미루지만, 여당의 세제조사회 등에서 격렬한 논의 끝에 나중에 말하는 「조례에 의한 감액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상업지 등의 고정자산세를 감액해야 한다는 강한 요망이 있는 한편, 시정촌으로 부터는 현재의 삼엄한 재정상황 속에서 이 이상의 감액은 절대로 멈추어 주기를 바란다 하는 비명에 가까운 요청이 밀려들었다. 또한, 실제의 부담이 요구측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멈추는 것으로 될까 하는 의문이나 지방분권의 진전속에서 시정촌의 기간세인 고정자산세를 그 뜻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감세해 버리는 것은 문제는 아닐까 하는 의견도 나왔다.

조례감액제도안은 이와 같은 주장을 감안한 결과로 제안된 것이다. 그 기초에 있는 것은 상업지 등의 고정자산세에 관해 부담의 정도, 과거로 부터의 부담 변화, 시정촌내 전체의 부담상황 등은 지역의 실정에 매우 정통한 시정촌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은 아닐까, 한편으로 시정촌은 재정책임을 지고 있고 감액해야 할까 어떨까, 한다면 어느 정도로 해야할까 등에 대하여 엄밀한 비교형량이 행해지는 것으로 되지만 이것이 야말로 자치의 정신에 합치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정자산세의 과세주체인 동경都 및 시정촌은 상업지 등의 고정자산세에 대해 당해 단체의 조례에 의해 부담수준 60%를 하한으로 하여 70%에서 60% 사이의 임의율을 정해 그 율을 상회하는 부담수준 토지의 고정자산세를 조례로 정한 율로 계산한 고정자산세액 까지 감액할 수가 있는 제도를 지방세법에 의해 창설하는 것이다. 이 경우, 조례에 의해 감액을 행하여도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부담수준 70%로 계산된다. 조례로 임의의 율을 정하는 것이고, 60%로 할 수밖에 없을가의 선택지 밖에 없는 셈은 아니다. 69%나 68%라 하는 비율도 충분한 선택지로 성립할 수 있다.

과세단체인 시정촌에 있어서는 삼엄한 선택을 요구받는 제도이지만 금회에 이것도 도입경지에 들어가게 된 배경에는 앞에서 말한 이유외에 이제부터의 분권형 사회에 있어 지방단체는 세입에 대해서도 일정의 결정권과 거기에 따른 책임을 분담해 가는 것이라 하는 지방분권의 큰 흐름이 있다는 것을 말해두고 싶다.

III. 개인주민세 균등화의 개정

개인주민세 균등화는 주민세만에 있는 것

으로 소득세에는 없다. 개인의 소득과세는 국가·지방 모두 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소득이 늘어나면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다.

그러나, 균등할은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그 다과에 불구하고 동일액의 부담을 요구한다. 소위 회비적 세로서 지방세에 어울린다고 하는 성격이 붙어있다.

소화 20년(1945년)대에는 개인주민세수의 20% 가까이를 차지한 적도 있지만 그 후 비율은 저하하고 현재는 2%에 불과하다. 소화 30년(1955년)대 이후의 경제성장 속에서 소득할의 세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 지방에서 균등할이 별로 인상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원인이다. 균등할의 세율이 인상되지 않았던 것은 소득세가 신장하는 속에서 오히려 역진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균등할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사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이상과 같은 배경 하에서 정부세제조사회는 수차에 걸쳐 균등할의 인상을 건의하고 있다. 현행 표준세율은 도도부현은 년액 1천엔, 시정촌은 인구규모에 따라 2천엔에서 3천엔, 결국 대도시 거주자라도 합하여 년액 4천엔이라 하는 저액이다.

월액으로 보면 3백엔 정도로 된다. 소득의 다과에 의하지 않고 과세된다고는 하여도 이것으로는 회비로서 너무 낮고, 모처럼의 주민세 부담분임이다 하는 성격이 발휘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 그 주장의 근거에 있다.

2004년도 개정에서는 여당의 세제조사회에서 이 문제가 들어졌다. 논의의 대세로서

는 정부세제조사회에 동조하는 방향이었지만 다음에 말하는 2개의 문제해결을 우선하고, 그 후에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지되어 결과로서 세율의 인상은 계속 검토한다는 것으로 되었다. 일단 미루는 것으로 되었지만 균등할의 문제가 이와 같이 널리 논의되고 일정한 이해를 얻는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큰 진전이라고 생각된다.

균등할에 대해서는 세율의 인상과 함께 시정촌의 인구단계별로 세율을 정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바꾸어 세율을 하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문제, 더욱이 균등할을 납세하고 있는 남편과 생계를 함께하는 처에 대해서는 소득이 아무리 있어도 균등할이 비과세로 되고 있는 현행제도를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2개의 과제를 안고 있었다.

우선, 인구단계별 표준세율이 두어진 것은 균등할을 도입한 소화 20년대, 대도시(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규모 도시(인구 5만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 그리고 소규모 시정촌(기타 시 및 정촌)과 같은 시정촌이라 하더라도 그 서비스의 내용에 크게 차이가 있다고 인식되었던 것에 의한다. 도로의 정비 상황, 학교의 교사 등등 확실히 차이를 두어야 할 상황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도 현재는 어떨까? 이제까지의 논의속에서는 그 만큼의 차이는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많은 지지가 있었다. 또한, 합병에 의해 중규모 이상으로 된 경우 등에는 균등할이 인상되는 것으로 된다. 금액은 결코 큰 셈은 아니지만 이것이 합병의 저해요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주장도 일부에는 있

다. 통일한다면 한 가운데 있는 것을 합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각각 세율이 너무 낮은 것은 아닐까 하는 논의중에 일체화를 위한다고는 하나 대도시만 인하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에서 최종적으로는 현재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표준세율 3천엔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되었다. 따라서, 현행세율 2천엔인 정촌 및 5만명 미만의 시는 1천엔의 인상, 2,500엔으로 되어 있는 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는 500엔의 인상으로 된다.

또 하나의 과제였던 생계가 동일한 처의 비과세 조치는 폐지되는 것으로 되었다. 전업주부에게 과세한다고 하는 틀린 보도 등도 있고, 소득이 없는 자에게까지 과세하는 것일까 하는 오해를 받아 망설인 면은 있지만, 소득이 일정 이하의 자에게는 각각 균등할이 과세되지 않은 구조이다.

그렇지만, 균등할을 납세하고 있는 남편과 생계를 함께하는 처만이 균등할이 비과세로 되어 있다. 처가 소득을 얻고, 주민세의 소득할을 납세하고 있는 경우라도 균등할은 비과세로 되고, 과세공평의 관점에서 이 비과세 조치의 폐지가 요구되었다.

대개의 숫자로 말하면, 현재 일본에는 처가 3,300만명 있고 그중 전업주부라고 불리는 자가 1,700만명, 나머지 1,600만명중 절반은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수입이라면 100만엔 이하)로 각각 균등할은 비과세로 되고 나머지 800만명이 이 조치에 의해 비과세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비과세 조치의 폐지에 의해 새롭게 균등할이 과세되는 것으로 되지만 부담의 증

가를 원만하게 하는 관점에서 경과조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다. 즉, 2005년도는 반액, 2006년도부터 전액의 과세로 되도록 2004년도의 법률 개정으로 되어 있다.

IV. 과세자주권

지방단체에 의한 과세자주권을 둘러싼 제 문제가 매우 열심히 논의된 것도 금회 세제 개정의 특징이다. 이것은 고이즈미 총리의 「지방에 가능한 것은 지방에」 「지방의 자주성을 확대한다」고 하는 기본방침을 받은 것이었다. 과세자주권으로 통상 떠오르는 것은 법정외세와 초과과세일 것이다.

법정외세는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세목을 지방단체가 그 조례에 의해 만들 수가 있는 구조이다. 조례성립 후 총무대신에게 협의하고 그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총무대신은 지방세법에 정한 몇 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동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되고 이 동의는 자유스러운 재량행위는 아니다.

현행제도는 소위 분권일괄법에 의해 종래는 허가로 되어있던 것을 동의를 요하는 협의제로 개정된 것이다.

금회의 논의는 이것을 일보 나가 예를 들면, 신청제로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이었다. 국가의 관여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요하는 협의제도로 개정된 것에서 아직 얼마 지나지 않았으므로 조금 더 실태를 보고 나서 논의하여도 좋은 것은 아닐까, 특정 소수의

납세자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는 법정외세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이익을 어느 정도 지키는 방안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조세법률주의와의 저촉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등의 문시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최종적으로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었다.

확실히 지적하고 싶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제도도 총무대신의 자유재량이 아닌, 진짜의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되는 것(이제까지 30여건의 협의 중 동의하지 않은 것은 오키야마市の 소위 마권세 1건뿐이다), 총무대신에 의한 동의제도가 있는 것에 의해 오히려 이것에 의존하는 결과로 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닐까, 지방단체도 주민대표의 의회를 갖고 거기에서의 검토를 거쳐 법정외세가 제도화 되는 것이므로 주민의사의 대표로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등의 의견도 나왔다.

최종적으로는 제도개정은 인정되지 않고 당분간은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일거에 신청제까지 진전시키는 것은 망설인다 하여도 무언가의 형태로 관여를 줄여 가는 것은 계속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초과과세에 대해서이지만 표준세율을 넘어 초과과세하고 있는 단체는 2,433단체, 세액으로 하여 4,712억엔, 그중 법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세수의 약 9할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일정한 세목에 대해서는 지방단체가 그것을 상회하는 율로 과세하는 것은 금지하는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다. 법인주민세나 법인사업세라 하는 법인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1.2배의 율로 되어 있다. 고정자산세는 1.5배이다. 일부 법인과세에 대해서는 제한세율 한도까지 과세하고 있는 케이스는 있지만 예를 들면 고정자산세 등에서는 제한세율이 2.1%가 아닌 1.75%로 하고 있는 단체가 최고세율의 단체이다.

개인주민세에 대해서는 제한세율이 두어져 있지만 소위 분권일괄법으로 폐지되었다. 역지로 제한세율을 존치해 둘 이유가 있는 것일까, 이것은 국가의 관여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의 생각 하에 심볼적인 의미에서도 폐지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논의가 행해진 것이다. 현시점에서 생각한 경우 여기에 준하는 것은 없는 것일까. 이것이 금회의 검토 시점이었다. 지방의 기간세는 개인주민세, 법인주민세, 법인사업세, 지방소비세에 덧붙여 고정자산세이다.

지방소비세는 일정한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고 원래 제한세율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어갈 여지는 없다. 법인과세는 국제적인 부담의 균형도 필요하고 현행의 초과 과세가 법인 중심이라는 것이 경제계의 반발도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 사정이 있고 제한세율 폐지에는 반대의 의견이 강하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2004년도 개정에서는 고정자산세의 제한세율을 폐지하는 것에서 과세자주권 확충의 일보를 내딛는다는 것으로 되었다. 자동차세, 경자자동차세 등 기타 세에 대해서도 검토의 도마에 올려졌지만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계속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 외에 표준세율의 정의도 바뀌게 되는

것으로 되었다.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5호에는 표준세율의 정의로서 「지방단체가 과세하는 경우에 통상으로 해야 할 세율로 그 재정상의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의한 것을 요하지 않은 세율을 말하며 총무대신이 지방교부세액을 정하는 때에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의 기초로서 이용하는 세율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의 모습이 표준세율의 규범성을 너무 강하고 지나치게 내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 논의의 발단이다. 지방단체의 자유도를 높인다고 하는 방향에서 생각한 경우 확실히 이 규정은 표준세율에 의하지 않은 과세를 강하게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된다. 초과과세를 선택하려고 할 때의 심리적인 저항으로도 된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분권을 생각한 경우 여기까지 국가가 요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필연성은 없고 쓸데없이 지방의 재량권을 좁힐 뿐이다.

이상과 같은 생각에 서면 표준세율의 규범성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이 정의 규정은 바꾸어 쓰는 것으로 된다.

더욱이, 전술한 고정자산세에 있어 조례감액제도의 창설도 지방단체의 자주적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과세자주권의 확대에 연결시켰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방분권 속에서 지방세제의 실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여 지방의 과세자율을 확대해 갈까 하는 방향에서 일보일보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V. 공적연금 등 공제, 노령자 공제의 개정

개인소득과세에 있어서는 이 수년간 거둬지는 감세, 제공제의 확충 등에 의해 세부담 수준이 극히 낮게 되어 있다. 즉, 기간세의 하나인 개인소득과세의 세수는 대폭으로 감소하고 국가·지방의 재정불균형 확대의 큰 원인으로 되어 있다.

국가·지방을 통해 재정의 다시 세우기에는 개인소득과세의 기간세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결이라고 생각된다.

그를 위해서는 제공제의 하나 하나를 다시 검토하고, 합리성이 없는 것, 역할이 끝난 것 등을 폐지 또는 축소하여 세제의 왜곡이나 불공평을 시정하는 것에 의해 너무 높아진 과세 최저한을 인하하고 다시 안정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세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 제1탄으로서 검토가 행해진 것이 배우자 특별공제(더 강화한 부분)의 폐지였다. 이 개정은 국세에 있어서는 2004년도분부터, 지방세에 대해서는 2005년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

2004년도 개정에서 논의된 것이 공적연금 등 공제와 노령자공제이다. 전자는 소득계산상의 공제로 개인주민세에는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후자는 소득세 50만엔, 주민세 48만엔으로 액은 다르지만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기본금이 사회보험료 공제라 하는 형태로 전액 소득공제되며 더욱

이 마지막에 있어서도 공적연금 등 공제에 의해 실질적으로 비과세로 되어 있다고 하는 점이 종전부터 문제로 되어 왔다. 적어도 처음에 비과세로 하는 것이라면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다. 제 외국에서도 여기까지 특별 취급하는 예는 없다.

한편, 노령자공제는 노령이라는 것으로 일정액을 특별취급하는 제도로서 강한 비판이 있었다. 이것에 대하여 오랜기간 사회를 지탱해 온 노인을 대우하는 것은 당연이라는 등의 반대론이 있고, 검토는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평을 보다 존중하는 방향에서

국민의식의 변화도 있고, 2004년도 개정에서는 노령자 공제의 폐지와 공적연금 등 공제의 일부 검토가 실현하는 것으로 되었다. 공적연금 등 공제가 일부 검토로 된 것은 표준적인 연금수입만의 세대에는 역시 과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배려가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개인주민세에 이 검토의 효과가 나오고, 증수로 되는 것은 2006년도부터로 된다.

2004년도의 지방세제 개정에서 이 상의 외에도 담배세 교부금의 창설 등 중요한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지면 관계상 이들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싶다. ☺